

GLOBAL TREND

세계지방자치동향

일본

일본에서의 지방 이주·정주 시책의 모범사례

미국

ChatGPT, AI 그리고 지방정부

일본

SDGs달성을 위한 일본 지자체의 정책사례

독일

매력적인 보행 친화거리 조성을 위한 도시 테라스 프로젝트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 방향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 방향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배경

- ▶ 한국은 1950년대 근로기준법을 도입하고 1981년 최초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등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옴
- ▶ 2000년대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산재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이러한 원인의 하나로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낮아 법·제도가 사망사고 방지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속 제기됨
 - 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불이익보다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 안전·보건조치를 미이행할 가능성이 높음
- ▶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산업과 사회의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요구됨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26일 제정됨(2022.1.27. 시행)
 - 종사자의 안전을 고려한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자발적으로 갖추도록 유도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 ▶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도입하고,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게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이 주로 현장에 대한 조치를 규정해 현장 책임자를 처벌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주로 경영관리 상의 조치를 규정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차이점임

<표 1>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주요 대상 정의

구분	정의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단계별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으로 폭넓게 규정함

- ▶ (적용범위)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되며,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시내버스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는 3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가짐
- ▶ (처벌 수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또는 시민)가 사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무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사망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규정되지 않은 '하한형'을 설정했다는 것이 큰 차이임
- ▶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표 2>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차이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¹⁾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소상공인, 면적 1,000㎡ 미만 다중이용업소 제외	
처벌기준	사망	1명 이상 발생	1명 이상 발생
	부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질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처벌수위	사업주/ 경영책임자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사망 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형 확정 후 5년 내에 동일 죄를 저지를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법인	• 사망 : 50억 원 이하 벌금 • 사망 외 : 10억 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 •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에 대하여 주의와 감독을 충실히 수행한 경우 제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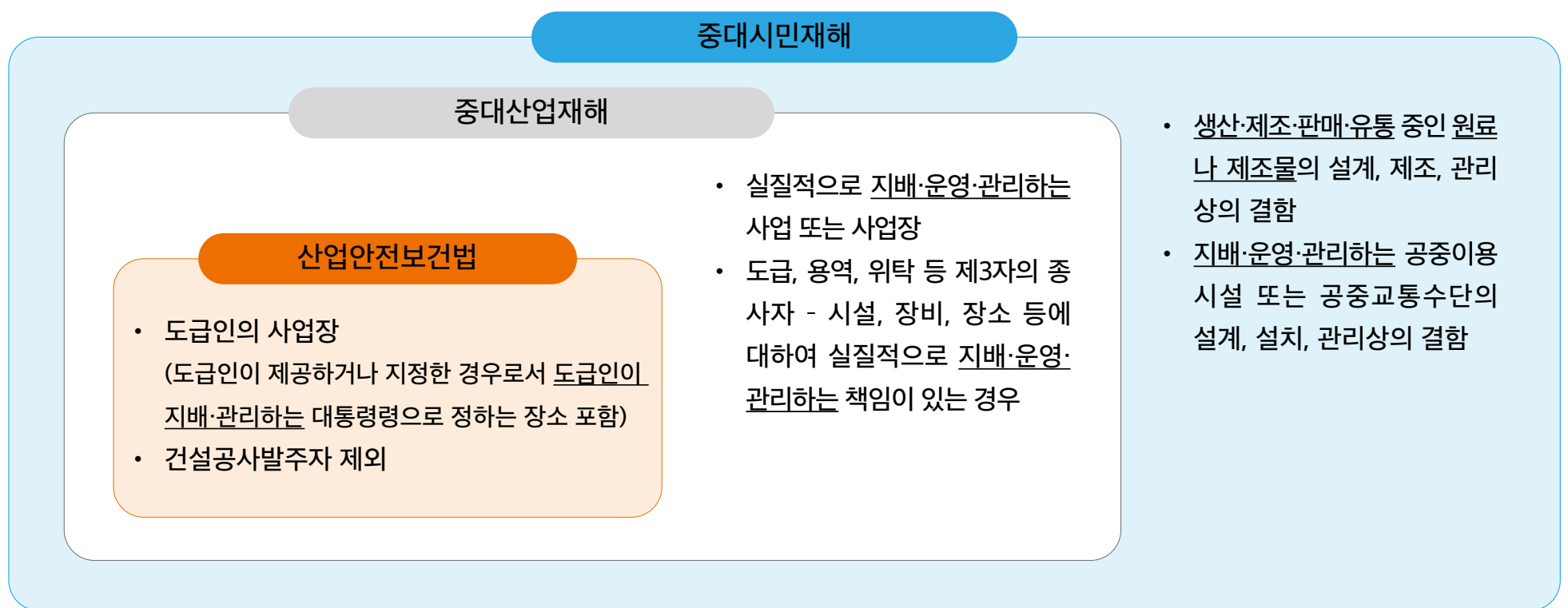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출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7.)」 및 권오용(2022)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및 한계

- ▶ (유사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가 모호하여 법적 해석 및 적용에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와 거의 유사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적용 대상이 더 넓고 의무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됨
 - 가령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없는 민사책임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유사 법령 간의 정합성이 떨어짐

그림 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 안전보건 확보 범위



출처: 정유철(2021)

- ▶ (적용대상의 형평성 및 실효성 한계)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는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있어 적용 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존재함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현황분석>에 따르면 2021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 27.26%로 가장 높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전체의 약 65%가 넘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에는 한계가 존재함
 - 사업체의 규모(근로자 수, 공사금액)에 따라서 처벌의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사 간에도 도급금액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 (모호한 의무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를 파악하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 가령 시행령 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서 정의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 정의되어 있어 매우 포괄적이며, 광범위하여 안전조치 미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 또한, 시행령 제2조(직업성 질병자)에서는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목록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직업성 질병의 발생 수준을 판단할 근거가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수준의 질병도 중대재해로 간주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
- ▶ (처벌로 인한 사업중단 위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처벌 수위는 자발적인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처벌로 인한 경영책임자의 부재는 기업 경영 위축 및 악화를 야기할 수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인 경우가 많아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책임자 처벌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 중단 및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 ▶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는 안전·보건조치이행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고용형태 및 원청·하청에 관계없이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적용·처벌 대상에 예외를 두기보다 모든 사업자나 법인 등이 예방적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소규모 사업장 등 자체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적용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하여 컨설팅, 지도
 - 점검, 예산지원 등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 포괄적이고 모호한 법조항은 위헌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 조항에 대한 해석·적용 과정의 혼란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및 제도 이행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함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상의 해석·입장 차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로 인한 공백은 사업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령에서 제시하는 처벌이 이뤄지기 쉽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함

참고자료

- 1) 김명준. (202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장 배경과 시사점. 사회법연구, (42), 105-122.
- 2) 고용노동부. (2022). 2021년 산업재해현황분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중심으로).
- 3) 고용노동부. (2021.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 4) 권오용. (2022). 중대재해처벌법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18(3), 470-477.
- 5) 임우택. (202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안전환경 Insight, GREENSAMSUNG New Year Edition 2021, 9-14.
- 6) 정유철. (202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법무법인(유) 율촌. (발표자료)
- 7)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2.8.18.)」
-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7.)」
-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12.8.)」

윤소연 부연구위원

syyoon@krila.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